

대한민국정부



제19731호 2020. 4. 14.(화)

【대통령령】

- 제30609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4
- 제30610호(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2
- 제30611호(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2
- 제30612호(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4
- 제30613호(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5
- 제30614호(국민 제안 규정 일부개정령) 16
- 제30615호(공무원 제안 규정 일부개정령) 19
- 제30616호(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공칙 일부개정령) 22
- 제30617호(국무총리비서실 직제 일부개정령) 24
- 제30618호(자원의 전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4
- 제30619호(기계설비법 시행령) 31
- 제30620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50
- 제30621호(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52

【부령】

- 기획재정부령제790호(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55
- 교육부령제208호(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56
- 국토교통부령제716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63
- 해양수산부령제405호(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70

【고시】

- 교육부고시제2020-225호(「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일부 개정<안>) 73
- 교육부고시제2020-226호(「특수교육 교육과정」 일부 개정<안>) 74
- 법무부고시제2020-98호(국적회복허가) 78
- 법무부고시제2020-99호(귀화허가) 78
- 법무부고시제2020-102호(국적취득신고) 78
- 환경부고시제2020-76호(기존화하물질 일부 개정) 79
- 환경부고시제2020-80호(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칙 및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80
- 환경부고시제2020-81호(수도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배관재료 고시 일부개정<안>) 81
- 국토교통부고시제2020-328호(고속국도 제400호 수도권 제2순환선(양평-이천) 건설공사 지형도면) 81
- 국토교통부고시제2020-329호(철도안전 전문기관 변경사항) 82

(이면 계속)

발행 행정안전부 문의 ☎ (044)205-1492, 205-1493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제19731호

관 보

2020. 4. 14.(화요일)

1)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등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도 기계설비산업의 국내외 시장 전망, 종전 기본계획의 추진성과 및 기계설비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함.

다.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대상 공사의 범위(제11조 및 별표 5)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확보를 위하여 기계설비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대상 공사를 창고 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건축물, 아파트·연립주택 등 에너지를 대상으로 소비하는 건축물, 지하역사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에 대한 기계설비공사로 정함.

라.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의 준수대상의 범위(제14조)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대상을 창고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건축물 및 500세대 이상이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을 사용하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로 정함.

마.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요건(제17조 및 별표 7)

기계설비의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 작성을 대행하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 건축설비·공조냉동기계 또는 에너지관리 등 분야의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을 포함한 4명의 기술인력 및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초음파유량계 및 디지털압력계 등의 장비를 갖추어야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1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대통령령제3062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제2항제6호 본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은 제외한다) 인가

제19731호

관 보

2020. 4. 14.(화요일)

제37조제2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0조제1항”을 “법 제10조제1항 본문”으로, “운행시간, 영업소, 정류소,”를 “운행시간 변경, 영업소 변경, 정류소 변경,”으로, “인가 및 신고의 수리”를 “인가”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행시간, 영업소, 정류소 및 운송부대시설의 변경만 해당한다) 신고(제38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사항의 신고는 제외한다)의 수리

제3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합회”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연합회는”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은”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 표의 제25호의2 및 제25호의3의 처분내용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사업일부정지 (60일)	사업일부정지 (120일)	사업일부정지 (180일)
사업일부정지 (90일)	사업일부정지 (180일)	사업일부정지 (180일)

별표 5 제1호 표의 제17호의2 및 제17호의3의 과징금의 액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60	360	360	360	360
720	720	720	720	720
1,080	1,080	1,080	1,080	1,080
540	540	540	540	540
1,0801,620	1,0801,620	1,0801,620	1,0801,620	1,0801,620

별표 6 제2호더목부터 노목까지를 각각 러목부터 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법 제26조제1항제9호를 위반한 경우				
1) 안전운행을 위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94조제3항제4호	50	50	50
2) 1)에 따른 준수사항 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94조제3항제4호	10	10	1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8조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탁기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등)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연합회가 진행

제19731호

관 보

2020. 4. 14.(화요일)

중인 운전업무 종사자격 시험 및 자격 수여에 대해서는 제38조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2021년도 운전업무 종사자격 시험 및 자격 수여를 위한 공고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3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하는 광역급행형 시니어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확인 등에 관한 운송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택시운송사업 종사자 자격시험의 공정성과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시험의 실시 및 자격 수여 등에 관한 업무의 수탁기관을 택시연합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1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대통령령제30621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 제목 중 “위판장”을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항, 항만 또는 지역”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개설된 수산물산지위판장”으로, “매매장소(이하 “위판장”이라 한다)”를 “양륙(揚陸)장소 또는 매매장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판장을”을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위판장”을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위판장”을 “양륙장소 또는 매매장소”로, “위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한 상환의무의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해야 하는 관련 서류를 구체화하고, 채무자가 대학생이거나 폐업·실직·퇴직 또는 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이유로 상환 유예권 의무상환액의 납부기한은 상환 유예 기간의 만료일까지인 점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0612호, 2020. 4. 14. 공포·시행)됨에 따라 상환의무 면제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대학생인 채무자뿐만 아니라 폐업·실직·퇴직 또는 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이 유예된 경우에도 세무서장은 원천공제 의무자에게 원천공제를 중단할 것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상환액을 초과 납부한 채무자 또는 원천공제 의무자에게 초과 납부금의 환급·충당 사실을 통지하는 데 필요한 서식을 채무자용과 원천공제 의무자용으로 구분하여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국토교통부령 제716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4월 1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의 구분 및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한다)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한다): 택시연합회”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한다)”로 한다.

제51조제1항 본문 중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택시연합회(이하“시험시행기관”이라 한다)는”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은”으로,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시험시행기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시험시행기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시험시행기관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은”으로, “해당 시험시행기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계재하여야”를 “계재해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시험시행기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전자문서록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택시운전 자격시험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시험시행기관에 제출하여야”를 “(전자문서록 포함한다)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확인하여야 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운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로 한다.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택시연합회는”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은”으로, “운송서비스의 과목”을

제19731호

관 보

2020. 4. 14.(화요일)

“운송서비스의 과목(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과목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택시연합회에 제출하여야”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로 한다.

제55조제1항 전단 중 “시험시행기관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은”으로, “해당 시험시행기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 시험시행기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험시행기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등록대장”을 “등록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해당 시험시행기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시험시행기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한다.

제59조제3항 중 “해당 시험시행기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해당 시험시행기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등록대장”을 “등록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별표 6 제2호더목1)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4 제2호나목에 따른 준수사항(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을 때 그 사정을 운송사업자에게 알려야 하는 준수사항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별지 제23호의7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2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